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장 은 혜(부연구위원)

법제분석 요약

개요▶▶▶

-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민간잠수부들이 투입되고 작업 중 사망·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함
- 민간잠수부 투입의 근거가 되는 수난구조종사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수난구조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1개의 조문에 불과함
- 수난구조 종사명령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부상·사망하여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은 의사상자법상의 의사자 유족에 관한 규정, 보상등급 변경신청 규정, 보상금 규정 및 보상금 지급 순위 규정,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제한, 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만을 정하고 추가적인 보상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아 치료 및 보상을 행할 명확한 근거가 흠결되어 법적용상 문제점이 발생
- 현행 수상구조법상 부상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휴업보상과 관련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난구조업무로 부상당한 자에게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물건 등의 일시사용과 관련해서도,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부상자에 대한 치료의 실시, 치료로 인한 휴업에 따른 보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 등급의 판정, 물건의 일시사용 수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보상 등, 수난 구호업무 종사자의 보상 관련 법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함

CONTENTS

I. 서론	4
1. 분석의 필요성	4
2. 분석의 범위	4
II. 수난구호 종사명령	6
1.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내용	6
2.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발령권자	6
3.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요건	7
4.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발령효과	8
5.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성격	9
III.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법제 현황	11
1. 보상책임	11
2. 보상금 지급 절차 등	12
3. 보상금의 지급 대상	15
IV. 관련 보상법제의 비교	16
1. 대상 법률	16
2. 보상의 범위	16
V.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21
1. 보상의 성격에 대한 검토	21
2. 휴업보상금의 지급	22
3. 절차 및 기준 등 흠결의 보완	23
3. 물건 등 일시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보완	26

01 / 서론

01 분석의 필요성

-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민간잠수부들이 투입되고 작업 중 이들의 사망·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함
 - 민간잠수부 투입의 근거가 되는 수난구호 종사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현행 법률상 1개의 조문에 불과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사망·부상하여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명확한 절차 규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치료 및 보상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구제가 불충분한 문제가 발생
-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을 통하여 치료·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함

02 분석의 범위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대한 분석
 - 명령의 법적 성격, 명령권자, 발령요건, 발령대상, 발령의 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



- 이를 통해 현행법상 유사한 성격의 보상체계 도출
-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법제 현황의 분석
 - 현행법상 보상 책임, 보상금 지급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대상의 분석
- 관련 보상법제의 비교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 「민방위기본법」(이하 “민방위법”이라 함) 등의 법률에서 규정된, 업무 수행 중 사망·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법제 분석
 - 다른 법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의 절차, 기준, 내용상의 미비점 검토
- 개선필요사항의 도출
 -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대한 검토
 - 휴업보상금 지급
 - 절차 및 기준 등 현행법상 흠결의 보완
 - 물건 등 일시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의 보완



02 / 수난구호 종사명령

01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내용

-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수난구호 종사명령(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
 -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인 구조대 또는 구급대(수상구조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속하지 않으며, 해양경비안전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임
 -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14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대상에서 제외

02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발령권자

- 구조본부의 장(수상구조법 제7조제1항)
 - 구조본부의 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말함
 -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함





- 소방관서의 장(수상구조법 제7조제2항)
 - 소방관서의 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함
 - 소방관서의 장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함

03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요건

-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것(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 수난구호 종사명령 등은 “수상구조법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에 포함되어 있음
 -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수난구호 종사명령 등”은 법에 따른 구조대 또는 구급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의 자에게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발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 등을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수상구조법 제16조에 따른 지원요청과의 관계
 -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수상구조법 제16조제1항)
 -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수난구호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



- 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의 예인을 포함)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수상구조법 제16조제3항)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조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수상구조법 제16조제3항)
 - 수상구조법 제16조에 따른 지원요청의 대상인 수난구조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조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수상구조법 제16조에 따른 지원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 수난구조 종사명령의 구체적 대상이 됨

04 수난구조 종사명령의 발령효과

- 수난구조업무에의 종사의무(수상구조법 제29조제2항)
 - 수난구조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수난구조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수상구조법 제45조)

〈참고〉

-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함(수상구조법 제2조제4호)
-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함(수상구조법 제2조제7호)





-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수상구조법 제2조제8호)
-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함(수상구조법 제2조제9호)

- 치료 및 보상금 지급(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
 -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05 수난구조 종사명령의 성격

- 수난구조 종사명령의 법적 성격
 - 수난구조 종사명령은 수상구조법 제29조에 따라 행해지는 하명처분¹⁾의 일종임
 - 수난구조 종사명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발생함
 - 하명위반의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수난구조 종사명령 등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령권자의 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수상구조법 제45조)

1) 강학상 “하명”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이들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를 말함. 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짐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의 성격
 -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서 실종자 구조작업을 수행한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에 찾아와 실종자 수색작업을 한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수난구호업무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행해졌음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수색작업을 수행한 경우와 달리, 자발적 의사로 수난구호업무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부상한 경우 의사상자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수난구호업무 종사자가 의사상자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수난구호종사명령의 발령권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 종사자가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수상구조법 제29조제4항)에서 유추할 때,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호업무는 “명령에 따른 비자발적 의무이행의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명령에 따른 의무 수행 중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입법례
 - 수난구호업무와 유사하게 명령에 따른 의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예는 현행법상 민방위법에서 찾을 수 있음
 - 민방위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민방위대원으로 동원²⁾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2) 「민방위기본법」 제26조(동원)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3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법제 현황

01 보상책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및 제5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

민방위법상 보상금 부담(시행령 제39조)

○ 발령권자에 따라 구분함

-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명령을 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읍·면·동장이 동원명령을 한 경우
→ 시·군·구가 부담

- 발령권자를 기준으로 보상금 부담자를 결정할 경우,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경우 발령권자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므로, 보상금은 국가(국민안전처장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중복지급의 금지(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02 보상금 지급 절차 등

- 의사상자법의 준용
 - 수상구조법 제29조제5항에서는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실시하거나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의사상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수상구조법 제29조 (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사상자법의 준용 범위

- 수상구조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사상자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의사상자법 제2조제5호,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
-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 준용되는 의사상자법의 내용을 보면, 의사자 유족에 관한 규정, 부상등급 변경신청 규정, 보상금 규정 및 보상금 지급 순위 규정,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의 제한(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 등임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 종사한 수난구호업무(구조업무 또는 구조 관련 교육·훈련)를 기재합니다.			
보상 명세	유형	내용		
	사망			
	부상(질병)			
	장애			
	기타			
보상 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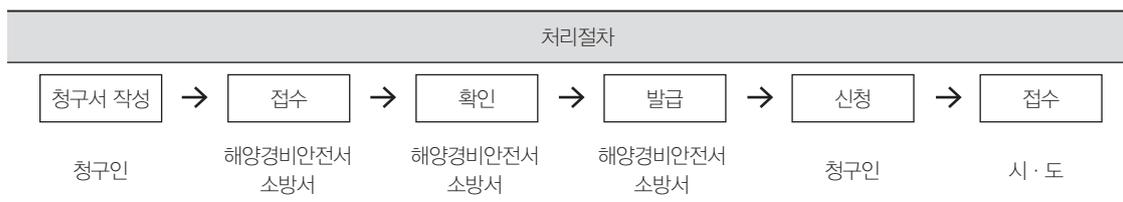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비안전서장 (인)
소방서장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보상금의 지급 절차
 -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조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03 보상금의 지급 대상

- 수난구조업무 종사로 인한 부상자 본인
 - 부상 범위 및 등급은 의사상자법을 준용
 - 의사상자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및 부상범위를 그대로 적용
- 수난구조업무 종사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 유족의 보상금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임
 -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의사상자법의 준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됨

〈참고〉

2015년 의사자유족 보상금: 202,913,000원

04 / 관련 보상법제의 비교

01 대상 법률

- 수상구조법
 - 수난구조업무 종사자의 보상과 관련한 근거법률임
- 의사상자법
 - 수상구조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상 보상관련 내용을 검토함
- 민방위법
 - 민방위법상 동원명령에 따른 임무수행과 수상구조법상 수난구조 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조업무 수행의 법적 성격이 유사한 것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법률로 검토함

02 보상의 범위

- 업무 수행 중 부상·사망에 대해서는 부상치료 및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휴업보상금 지급이 행해짐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의 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수상구조법 보상	의사상자법 보상	민방위법 보상
부상치료	○ 제29조	의료급여의 제공(제11조)	○ 제29조
휴업보상	×	×	○ 제28조
사망보상	○	○	○
장애보상	○	○	○

● 부상치료

- 부상자 치료와 관련하여 수상구조법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치료의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된 준용규정에는 부상치료에 관한 규정이 없음. 즉, 치료의 실시에 대하여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및 치료비 청구 등과 관련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부상치료와 관련된 의사상자법상의 규정으로 제11조의 의료급여를 들 수 있으나 수상구조법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준용규정으로 적시되지 않고 있음

	수상구조법 제29조	의사상자법 제11조	민방위법 제29조
내용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함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를 제외한 의상자 및 의사자에 대하여,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함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³⁾ 및 보훈대상자 지원법 ⁴⁾ 을 적용하여 치료를 실시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민방위법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통하여 부상자 치료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부상자의 치료) 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한다.

● 휴업보상

- 수상구조법에서는 휴업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없음
- 의사상자법에서는 휴업보상금 지급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의상자 본인 및 의사자 유족에게 취업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수상구조법	의사상자법	민방위법 제28조
내용	규정 없음	규정없음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

- 휴상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근로기준법 제79조	민방위법 제28조
내용	<p>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p> <p>-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p>	<p>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p> <p>휴업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p>

● 사망보상

- 3개의 법률 모두 사망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보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음

	수상구조법	의사상자법	민방위법
내용	<p>의사상자법 준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고〉 2015년 의사자유족 보상금: 202,913,000원</p> </div>	<p>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고〉 2015년 의사자유족 보상금: 202,913,000원</p> </div>	<p>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⁵⁾(사망한 해의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고〉 2014년 전체임금총액의 36배 상당금액: 3,189,995원 × 36 = 114,839,820원</p> </div>

5) <http://laborstat.molab.go.kr/>



● 장애보상

내용	수상구조법 및 의사상자법		민방위법	
	등급	보상금	장애 등급	보상금
	제1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100/100	제1급	제38조제1항제1호의 사망 보상금(이하 "사망 보상금"이라 한다)의 12/12
	제2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88/100	제2급	사망 보상금의 11/12
	제3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76/100	제3급	사망 보상금의 10/12
	제4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64/100	제4급	사망 보상금의 9/12
	제5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52/100	제5급	사망 보상금의 7/12
	제6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40/100	제6급	사망 보상금의 6/12
	제7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20/100		
	제8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10/100		
	제9급	사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5/100		



05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01 보상의 성격에 대한 검토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 구조행위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 민방위기본법상의 업무 성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수상구조법	의사상자법	민방위법
업무의 성격	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호행위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한 구호행위	동원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자발성 여부	비자발적(원칙)	자발적	비자발적

- 수상구조법 제29조제4항에서는 수난구호업무 종사자가 의사상자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수난구호종사명령의 발령권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 종사자가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서 유추해 볼 때, 법에서도 의사상자법상 구호행위와,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종사가 성격이 같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임
- 의사상자법상의 보상규정보다는 민방위법상의 보상 규정이 수난구호업무에 따른 보상과 그 법적 성격이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절차·내용상의 보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물론, 수상구조법상의 수난구조종사명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상의 동원명령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함
 - 실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종사명령에 따라 억지로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다기 보다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종사명령에 응한 경우도 상당함
- 현대국가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때에 민간인에 대해 생명·신체상의 위험을 감수한 구조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른 수난구조업무종사는, 의사상자법에 따른 직무외의 행위로 인한 구호의 성격과 민방위기본법상의 동원명령에 따른 업무수행의 성격 양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 보상 법제의 보완이 필요함
 - 현재는 의사상자법의 일부규정만 준용하고, 구체적인 절차 규정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법에서 준용되지 않는 부분 및 추가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한 법 적용에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02 휴업 보상금의 지급

- 일반적 배상·보상 규정과의 균형
 - 현행 수상구조법상 부상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휴업보상과 관련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난구호업무로 부상당한 자에게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민방위법에서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해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음
- 휴업보상금 지급의 기준
 - 「민방위기본법」상 휴업보상의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⁶⁾
 -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게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종사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법으로 명시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됨

03 절차 및 기준 등 흠결의 보완

- 절차 및 기준의 흠결
 - 현행법은 의사상자법의 보상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외에 별다른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구체적 절차 및 보상 등의 기준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생
 -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치료의 실시

-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6) 제4장 관련 보상법제의 비교, 2. 보상범위 중 휴업보상 부분 참고



-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치료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의사상자법에 치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민방위법령’을 준용하여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구체적 절차가 법령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치료의 실시와 관련한 절차의 보완이 필요함

① (신청인: 부상자)

- 치료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

② (국민안전처장관)

- ①의 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조업무를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③ (국민안전처장관) 치료비를 부담, 신청인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치료비를 부담함(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참고)

2) 부상 등급의 결정

-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의사상자법을 준용할 경우,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선행되어야 할 부상등급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3) 전반적 절차규정의 보완 필요성

- 구체적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 구체적 지급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① (신청인: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상금청구서에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조업무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부상자·사망자의 경우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 병원·의원을 포함)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부상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신청인이 부상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도지사)

- ①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

③ (국민안전처장관) 보상금지급을 결정(부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 「민방위기본법」의 경우 보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으나 수난구조법에서는 이러한 심의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부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의 심의절차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④ (신청인)

- 부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③에서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상등급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에 따라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함

⑤ (국민안전처장관)

- 결정된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04 물건 등의 일시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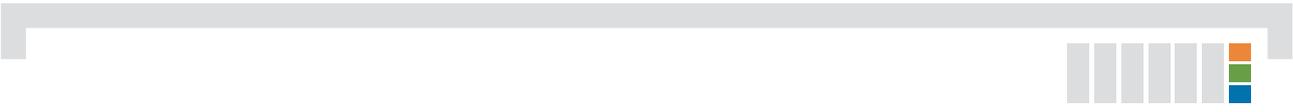
- 물건 등의 일시사용에 대한 보상

- 수상구조법 제29조에서는 물건 등의 일시사용 등을 규정하고, 수상구조법 제45조에서 이러한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물건 등 일시사용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 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음

	수상구조법 제29조	의사상자법 제9조	민방위법 제32조
사용 등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일시사용 등을 거부하면 벌금 부과 가능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사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집행 가능
보상규정	보상규정 없음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 일시금 지급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청구 가능. 처분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특법 ⁷⁾ 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 별도의 항을 구성하든, 해당 조문에 추가하는 방법을 취하든 상관없으나, 물건 등의 일시사용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처분을 한 구조본부의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권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결 절차 등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법제분석지원 IssuePaper 15-21-⑥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발행인 이 원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